

# 여객운송약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영업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간에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①이 약관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의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한 연락운송 업무 및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내부규정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와 연락운송하는 기관과 공항철도(주)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운송 등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와 다른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역”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의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3. “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 및 서울교통공사구간과 서울메트로9호선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인천교통공사구간, 공항철도(주) 청라국제도시~서울역구간, 신분당선구간, 용인경량전철구간, 의정부경전철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연계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구간 간에 각각의 운임을 합산적용 후 해당 운임만큼 분배를 전제로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6.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9호선 언주~ 종합운동장 간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7. “서울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1호선 지하서울~지하청량리간, 2호선 시청~왕십리 경유~시청간과 신설동~성수간, 신도림~까치산간, 3호선 지축~오금간, 4호선 당고개~남태령간, 5·6·7·8호선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8. 삭제('17.7.1)
9.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한국철도공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0. “인천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인천교통공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1.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2. “공항철도구간”이라 함은 공항철도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3. “신분당선구간”이라 함은 신분당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4. “용인경량전철구간”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5. “의정부경전철구간”이라 함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6. “직원”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 “승차권”이라 함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교통카드와 정기승차권, 단체승차권 및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18. “1회용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라 함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연락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9.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20.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21.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통용되는 선급 후급·우대용교통카드를 말합니다.
22. “선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가 제휴한 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한 카드 포함)를 말합니다.
23. “후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24. “우대용교통카드”라 함은 도시철도 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 시마다 발급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25. “카드사업자”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26. “기본운임”이라 함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정한 운임을 말합니다. 다만, 1회권(우대용, 어린이용은 제외)은 동 운임에 100원을 추가한 운임으로 합니다.
27. “버스”라 함은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 이용 시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로서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간선, 지선, 순환) 및 마을버스, 경기도지사(시장·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일반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마을버스, 그리고 인천광역시지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를 말합니다.

28. “수도권 내 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29. “수도권 외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30. “경계역”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31. “서울시계 내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 서울교통공사구간 중 1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북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 공항철도 구간 중 서울~김포공항구간을 말합니다.
32. “서울시계 외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계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33. “열차”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34. “환승”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제27호에 정한 버스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35.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라 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운임의 지급) ①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급교통카드를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운임 또는 충전대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수수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월승, 무표 등 특종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운임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여객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우대용 제외)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3.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4. 단체여객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 또는 우대 이용 대상자가 1회권(우대용)을 발급받은 때
5.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②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①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역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②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③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열차 내에 별표1의 위험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16.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7조(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초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제8조(운임의 감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2.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정한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
4. 그 밖의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9조(운임요금의 단수처리) ①1회권 및 단체권의 운임요금 계산시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②1회권을 제외한 교통카드운임 계산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권 운임 계산시에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 제2장 여객운임

제10조(여객의 구분) ①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 : 만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교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1항제1호와 동일

- 2. 어린이 : 제1항제2호와 동일
-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제11조(운임요금의 계산) ①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기본운임 : 10km까지 별표2에 정한 운임
- 2. 추가운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까지마다,

50km초과구간은 8km까지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②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③도시철도와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 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가. 서울광역시, 경기(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그리고 인천광역시, 좌석버스인 경우 30km

나.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2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④제3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 ~ 다음 날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제3항에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선후급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그날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2조(여객운임 적용) ①편도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어른·청소년·어린이 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합니다.
- 2. 단체편도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에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 30%, 어린이 60%(어린이운임의 2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 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인당 1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3. 정기권 운임은 별표3과 같습니다.

4. 그 밖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②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제2호에 의거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3장 승차권의 발매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회권

가. 어른용(일반용)

나. 어린이용

다. 우대용

2. 정기권

가. 서울전용 정기권

나. 거리비례용 정기권

3. 단체권

가. 어른단체

나. 청소년단체

다. 어린이단체

4. 선급교통카드(이하“선급카드”라 합니다)

가. 어른선급교통카드(이하“어른카드”라 합니다)

나. 청소년선급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다. 어린이선급교통카드(이하“어린이카드”라 합니다)

5. 후급교통카드(이하“후급카드”라 합니다)

6. 우대용교통카드

가.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나.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다.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제14조(승차권의 발매, 발급, 충전장소 및 위탁발매등) ①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무인충전기 또는 선급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는 발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매 또는 발급합니다.

②제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필요한 경우 승차권 발매·발급장소를

따로 설치하거나 승차권의 발매 및 발급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 승차권 발매 및 발급 위탁에 필요한 승차권 발매·발급방법, 종류, 할인율, 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제15조(승차권의 발매범위) ①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도시철도구간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②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과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하는 타운송기관 및 카드사업자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구간 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승차권 발매 및 발급에 관한 사항과 운임의 정산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운송기관과 해당 카드사업자가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6조(1회권의 발매 및 발급) ①1회권은 발매일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②1회권은 여객이 도시철도구간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

③1회권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구간의 운임과 정해진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④제12조제1항제4호의 무임대상자는 직접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제23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제3항의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유아는 제외합니다.

제17조(단체권의 발매) ①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열차운용 및 수송력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②제1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유아단체는 제1항에 의합니다.

③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①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교통카드는 운송기관과 카드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도시철도구간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서울메트로구간9호선운영(주) 내에서 선급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기권의 충전) ①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타 기관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제3호에 정한 통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운임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20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②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인이 1매를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어른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4.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1회권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④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의 경우 카드 내 기본운임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250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⑤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⑥정기권은 제21조에 정한 통용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별 사용구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울전용 : 서울시계 내 구간
2. 거리비례용 : 도시철도구간에서 별표3에 정한 중별 교통카드 운임지역 내

제21조(승차권의 통용기간) ①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회권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교통카드
  - 가. 선급카드 : 카드 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 나. 후급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3. 정기권 : 충전할 때 정한 사용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4. 단체권 : 발매할 때 따로 정함

②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이내를 통용기간으로 봅니다.

③통용기간을 지정하여 발매한 승차권은 통용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승차권의 통용 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은 소지한 승차권이 승차 중에 그 통용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계속 승차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②여객이 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남은 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③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봅니다.

제23조(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①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은 사용 후 확인된 카드를 보증금 환

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라.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증
  - 마.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24조(승차권의 무효) ①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3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6조제3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3. 제36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 제5장 승차변경, 무표 등의 처리

제25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급 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합니다.

제26조(승차변경) ①1회권 또는 단체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구간에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1회권 운임을 따로 내야 합니다.

③선급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에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④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제27조(부가금)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도시철도구간내 역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승차권의 부정사용이 제1항의 각호 중 2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한 것을 적용합니다.

④여객운임 및 부가금은 현금 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자기앞수표 및 교통카드로 낼 수 있으며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제1항제2호의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운임요금 영수증 하단에 「분실증명서」라고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관할 각 역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권 및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 당일의 기록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기권은 분실일로부터 정기권 유효기간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잘못 승차한 여객 처리)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비상게이트의 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정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29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등) ①승차역의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하차역 교통카드정산·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또는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 또는 구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내야 합니다.

②승차역에서 정상적으로 개표되었으나 하차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승차권(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제외)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①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②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③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반환받아야 합니다.

④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운송수단 등 제공) ①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 지급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제30조 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다음 각 목의 대체교통비 지급
  -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5,000원
  -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10,000원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만을 반환합니다.

제32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①승차권의 표시된 사항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정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권의 경우는 발매역에서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선급카드 및 후급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드사가 처리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정기권 : 정기권여객운임×남은 횟수/60(다만, 유효기간 내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③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권은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운임 외에 카드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정기권카드는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운임을 반환하며 그 외에 정기권카드 대금은 최초 충전 후 1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합니다.

제33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권 및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단체권 : 해당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3.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일수×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횟수×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②제1항에 의거 반환을 청구한 경우, 1회권 카드는 외관상 훼손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③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같이 승차권을 반환합니다. 다만, 정기권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를 반환합니다.

④여객의 착오로 잘못 충전한 정기권 및 사용 중 정기권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의거 반환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⑤여객은 분실한 승차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에 한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

제34조(휴대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애완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겹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6. 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 ②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메트로9호선 운영(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5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 제8장 보칙

제40조(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해당 협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1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합니다.

[별표1]

위해물품 (제6조제3항및제34조제1항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li> <li>○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li> <li>○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li> </ul>
산화성 물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li> <li>○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li> </ul>
독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li> <li>○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li> </ul>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피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2]

**여객운임(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기본운임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1,250원
	(2) 1회권	1,350원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720원
	(2) 1회권	1,350원
추가운임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450원
	(2) 1회권	450원
	라. 추가운임	
	(1) 어른	100원
	(2) 청소년	80원
	(3) 어린이	50원

다만,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별표 3]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서울전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55,000	서울시계내	1,550	1,450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입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까지	1,550	1,450
2	58,000	25Km까지	1,650	1,550
3	61,700	30Km까지	1,750	1,650
4	65,500	35Km까지	1,850	1,750
5	69,200	40Km까지	1,950	1,850
6	72,900	45Km까지	2,050	1,950
7	76,700	50Km까지	2,150	2,050
8	80,400	58Km까지	2,250	2,150
9	84,200	66Km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까지	2,750	2,650
14	102,900	106Km까지	2,850	2,750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

[별표 4]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6조관련)**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4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 5]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제36조관련)**

내 용	부 가 금(1건당)
(1) 위해물품	100,000원이하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5,400원이하
(3) 휴대 제한품	900원이하